

200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

1.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

- 감사기간 : 2008. 5. 6.~ 6. 4.
- 감사인원 :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2과

2. 감사원 요구사항 및 개선조치(계획)

지적항목	조치요구사항	개선조치(계획)
1.연도말여유 재원의 집 행 부적정	○연도말 여유재원의 70%이상 퇴직급여총당금으로 우선 적립	○'07년 결산잉여금 140,000천원 퇴직 급여금에 기 총당 -향후 결산잉여금 발생시 정부의 “세출예산집행지침” 준수 처리
	○능률성과급 등 명목으로 인건비 편법인상방지 등 예산 집행업무 철저	○인건비 편법집행 방지를 위해 인건비 항목 관리 철저 -보수규정 중 특별상여금 항목 삭제 ('08.9.30, 이사회 상정)
	○관련자 주의 촉구	○관련자 6명 주의장 발부
2.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통보업무 처리 부적정	○피해구제건처리시 인지된 사업자의 “식품위생법” 등 위반 혐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철저	○그 동안 사업자의 고객관리차원 배상, 위법행위의 주체 미확인, 법 위반여부 불분명한 사건 등에 대해 위법사실 미통보 ○향후 위와 같은 사건에도 관계기관에 위반혐의 통보예정.
3.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운영 부적	○“소비넷”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가 “안전넷”으로 자동 이관되도록 시스템 보완방안	○“소비넷”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가 “안전넷”으로 자동이관되도록 시스템 보완 추진 완료

정	강구	
	○ 사업자가 귀책사유 인정한 15건의 시정권고 조치	○사업자가 시정조치 기 완료 -추가로 시정권고 조치 실익 없음
	○ 향후 위해정보 심의 부실로 처리방법 부적절 결정 또는 사업자가 귀책사유 인정한 건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위해정보처리업무 철저	○ 「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업무처리 규정」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위해사고가 반복적이거나 다수 발생하는 건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강화하였음('08.7.23, 제122회 이사회 안건 별첨5).
	○ 관련자 주의 촉구	○관련자 3명 주의장 발부

지적항목	조치요구사항	개선조치(계획)
4.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	○ 선택적 복지비를 예산편성 당시보다 많이 지급하지 말 것	○ 선택적복지비 예산편성 기준 준수 집행 - '08년부터 예산편성 범위내 집행 중
	○ 자기계발비의 사용용도 확인하지 않은채 정액 지급하지 말 것	○ 자기계발비 관련 "복리후생규정"에 근거 마련('08. 9.30. 이사회 의결) ○ 집행방법 개선 - 현금지급 대신 복지카드로 지급방법 변경 - 사용용도 확인: 사용증빙서 제출의무화
5. 특별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이월제도 운영 부적정	○ 정기휴가제도와 유급휴가 이월제도 폐지하고 관련업무 철저	○ 정기휴가 폐지 - 복무규정상 정기휴가 관련조항 삭제 예정('08. 9. 30. 이사회 의결) ○ 유급연차휴가 이월제도 폐지 - '08년도부터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제도 폐지
6. 차량유지비 급여성 집행 부적정	○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차량유지비를 급여성 경비로 집행하지 말 것	○ 3급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 중단('08. 10월부터 시행) - 출장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
7.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	○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이 제한된 용도에 집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	○ 기관장 업무추진비 적용범위 외 및 현금 집행 억제 - 축조의금 등 정부의 예산집행관리지침에서 지정된 항목에 한하여 현금 집행을 최대한 억제
	○ 외부교육파견자 업무추진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	○ 외부교육파견자 업무추진비 불지급 - '08.4.부터 교육파견자의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
8. 소비자교육 강사제도 운영 부적정	○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단 중심으로 운용	○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단 운영('08.9.1) - 전담강사 공모선발 : 2명 - 업무 : 기업교육 전담 등
	○ 겸임강사의 강의료는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는 지급토록 예산집행관리기준 개정 운영	○ 겸임강사의 강의료 자체수입 처리 및 필요경비 별도 지급 - 겸임강사의 직무관련 출강등에 대해 사전 승인토록 "임직원 행동강령" 개정(별첨9)

지적항목	조치요구사항	개선조치(계획)
9.안식년제도 운용 부적정	○ 안식년제도 폐지	○안식년제도 폐지 -직원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로 통합 운영 추진('08년 안식년 대상자를 KAIST 공정거래센터 등 교육기관 파견으로 대체, '08.10.1. 시행)
	○ 업무외 인력의 방만운영 방지 등 인력운용 관리 철저	○인력운용 관리 철저 -업무외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
10.직원 대외 활동 승인 및 관리 부적정	○ 직원의 근무시간외 대학 정기출강 과다 또는 근무시간중 대외활동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주지 않도록 승인기준 보완	○직원의 대외활동 승인기준 보완(대외활동지침 개정, '08. 10월말) -직원의 근무시간외 대학 정기출강 범위, 개인별 활동가능한 대외위원회 수 및 활동시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준 보완 추진
	○ 전보시 직무와 관련된 외부위원회 위원직 후임자에게 인계토록 대외활동 승인관리 업무 철저	○전보시 직무관련 외부위원회 위원직 후임자에게 인계 철저 시행 -'08. 9. 4. 전보 인사직후 외부위원회 인계철저토록 공문 시행 ○향후 인사 이동시 대외위원회 활동 인계여부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할 예정
11.주요 내규의 이사회 심의 누락	○ 인사, 예산, 보수 등 경영상 중요사항의 이사회 심의·의결로 관련 규정의 제·개정하는 등 이사회 운영 철저	○정관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중요사항의 이사회 심의·의결 절차 준수 철저 -선택적복지제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·의결 ('08. 9.30. 이사회)